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2. 3 선고 2024가단6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2. 3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포항시 남구 J 대 89m²에 관하여, 피고 B, C는 각 6/78지분, 피고 D는 21/78지분, 피고 H, I는 각 15/78지분, 피고 E, F, G은 각 5/78지분에 관하여 1989. 5. 2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.

가. 포항시 남구 J 대 89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K의 소유였는데, K은 1984. 3. 23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'망 K 가계도 및 상속지분'에 기재된 바와 같다.
나. 원고는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은 피고 D로부터 1989. 5. 28.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인 최종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9. 5. 2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권희

별지